

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906호
- 나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3년 5월 30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2. 제안이유

- 가. 2023년도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사업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이 변경됨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도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정책사업비

(국제교류협력 추진) 1,045백만원 증가 및 예치금 1,045백만원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.

나. 운용규모 : 6,339백만원

[수입계획 변경내용]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당초	1차 변경(A)	2차 변경(B)	3차 변경(C)	증감(C-B)
계	6,120	6,329	6,339	6,339	-
일반회계전입금	1,500	1,500	1,500	1,500	-
이자수입	91	91	91	91	-
기타수입	-	-	9	9	-
예치금회수	4,529	4,738	4,738	4,738	-

[지출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, 정책사업 단위)

구 분		당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3차 변경 (D)	증감 (D-A)	증감율 (D/A*100)
정책사업	계	6,120	6,329	6,339	6,339	-	-
	계	1,703	1,783	2,033	3,078	1,375	80.7%
정책사업비 (국제교류협력추진)	비용자성 사업비	1,559	1,639	1,889	2,934	1,375	
	서울시립대	761	761	761	761	-	
	인재개발원	301	301	301	301	-	
	도시철도	52	52	52	52	-	
	소방안전	125	125	125	125	-	
	재해구호	320	400	400	400	80	
	해외도시문화교류	-	-	250	250	250	
	청년해외봉사단	-	-	-	1,045	1,045	
인력운영비	144	144	144	144	-		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5	5	5	5	-	0%
재무활동	예치금	4,412	4,541	4,300	3,255	△1,157	△26.2%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당초, 제315회 정례회)대비 정책사업비(국제교류협력 추진) 80.7% 증, 재무활동(예치금) 26.2% 감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변경안의 개요

- 해외도시 문화교류사업과 청년해외봉사단사업의 신규편성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를 초과변경하게 되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조성 및 운용 현황

- 서울시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와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(이하 ‘국제협력계정’)을 설치·운용하고 있음²⁾.
-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과 재해 구호경비 등의 용도로 지출됨.
-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44억 1천 2백만원³⁾으로, 전년대비 1억 1천 7백만원 감소함.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0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2.(생략)

2)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국제협력계정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됨.

3)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어 2023년 연도말 조성액과 총 조성규모가 동일함.

< 2023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>

(단위: 백만원)

2022년도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
	수입	지출	증감	
4,529	1,591	1,708	△117	4,412

- 2023년 당초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5억 3천 4백만원 감소한 61억 2천만원임.
- 수입은 ▶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, ▶ 예치금 회수수입 45억 2천 9백만원, ▶ 이자수입 9천 1백만원임.
- 지출은 ▶ 비융자성사업비 15억 5천 9백만원, ▶ 인력운영비 1억 4천 4백만원, ▶ 기본경비 5백만원, ▶ 예치금 44억 1천 2백만원임.

< 2023년 당초 기금 수입·지출 계획 >

(단위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구분	2023년	2022년	증감	구분	2023년	2022년	증감
계	6,120	6,654	△534	계	6,120	6,654	△534
일반회계 전입금	1,500	1,790	△290	비융자성 사업비	1,559	1,983	424
예치금 회수	4,529	793	3,736	인력운영비	144	137	7
이자수입	91	70	21	기본경비	5	5	-
				예치금	4,412	4,529	△117

- 국제협력계정은 비융자성사업비를 통해 ‘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’ 등 5개 사업에 15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함.

< 당초 비용자성 사업 편성 현황 >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사업내용	2023년
총 계		1,559
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	개도국 공무원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 운영·지원	761
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	외국도시 공무원 서울시 우수정책 연수기회 제공	301
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	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 및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업 해외사업 수주 기회 제공	52
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	개도국에 불용소방차 무상양여	125
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	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긴급 구호자금 및 물자 제공, 구호인력 파견	320

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

- 2023년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세 차례 변경되었으며,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.

< 2023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>

(단위: 백만원)

수 입 계 획					지 출 계 획				
구분	당 초	변 경			구분	당 초	변 경		
		1차	2차	3차			1차	2차	3차
계	6,120	6,329	6,339	6,339	계	6,120	6,329	6,329	6,339
일 반 회 계 전 입 금	1,500	1,500	1,500	1,500	비 용 자 성 사 업 비	1,559	1,639	1,889	2,934
이 자 수 입	91	91	91	91	인 력 운 영 비	144	144	144	144
기 타 수 입	-	-	9	9	기 본 경 비	5	5	5	5
예치금회수	4,529	4,738	4,738	4,738	예 치 금	4,412	4,541	4,300	3,255

- 제1차 변경(2023.2.)은 2022년 기금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9백만원을 증액하고, 지출계획에 튀르키예 지진 재해구호 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함.

- 제2차 변경(2023.5.)은 수입계획에 기금 결산 이후 2022년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9백만원을 증액하고, 지출계획에 ‘해외 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’ 2억 5천만원을 신설함.
- ‘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’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문화 공연 및 전시, 튀르키예 공화국(앙카라) 건국 100주년 기념을 세부 사업으로 함.
- 제3차 변경(2023.5.)은 지출계획에 예치금 10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‘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’을 신규 추진함.
- ‘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’은 한국국제협력단(KOICA)과 협력하여 서울거주 청년을 아시아·태평양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, 교육, 보건 의료, 농촌개발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임.

<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개요 >

- 추진목표
 - 청년에게 국제개발 협력 해외 봉사 경험을 제공하여 자존감 및 국제 감각 함양
 -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이해 증진
 - 참여자의 경험이 한국사회로 환류되어 사회적기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발판 마련
- 지원대상 : 만 19세~39세 서울 거주 청년
 - ※ 고립청년·취약청년(저소득층, 장기미취업자 등)·시정기여자 등 정원의 20% 내외 선정 목표
- 지원규모 : 서울 거주 청년 50명
- 파견기간 : 해외 현지 파견 약 3개월
- 파견지역 : 아시아·태평양 개발도상국(캄보디아, 방글라데시, 라오스, 스리랑카 등)
- 지원내용 : 국내 사전 교육 및 발대식(1개월) + 해외봉사(3개월) + 사후관리
 - ※ 해외봉사 활동분야 예시) 프로젝트, 교육, 기후·환경·적정기술, 보건의료·농촌개발, 사회복지·청소년개발, 젠더·인권 등
- 총사업비 : 13억원(2023년 1,045백만원, 2024년 255백만원)
 - ※ 대외협력기금 활용, 장기계속계약 추진
- 추진절차 : 사업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 예산편성(23.3~23.7), 시범 운영(23.7~24.4)

라.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⁴⁾.
- 이번 변경안은 ‘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’ (제2차 변경)과 ‘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사업’ (제3차 변경)의 신설로 인해 정책사업비의 80.7%가 변경되면서 제출됨.
- 정책사업비 변경의 주요원인인 ‘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사업’은 정부기관(KOICA)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청년을 파견하여 청년의 경력형성과 서울의 국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바, 사업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됨.
- 다만, 예산의 세부내용이 파견청년의 체류비, 항공료, 활동비로 구성되어, 사실상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나 재해구호로 한정되어 있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지출용도로는 적절하지 않음.

4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- 또한,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일반회계로 추진될 예정인 바,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 탄력적·자율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으로 사업을 신설하면서 엄격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 범 준	02-2180-8056